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병준

충청북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8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1일

3. 제안이유

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채용협의체와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, 현행 조례 「충청북도혁신도시관리위원회 설치·운영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나.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실무협의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라.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추진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.
- 기존의 특별법은 금년 3월 혁신도시를 육성·발전시키기 위한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으로 개정되어 '18. 3. 27.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‘지역인재채용협의체’와 ‘혁신도시발전위원회’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1조의2⁴⁾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⁵⁾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지역인재채용협의체 및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) 제31조의2(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~ ④ <생략>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.[본조신설 2018. 2. 27.]

5) 제32조(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~ ④ <생략>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 및 도가 협의하여 정한다.[전문개정 2018. 2. 27.]

- 입법예고('18. 6. 25.~'18. 7. 16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- '혁신도시 시즌2'를 위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'지역인재채용협의체'와 '혁신도시발전위원회'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다만, 하나의 조례안에 두 개의 위원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1조에 제시된 목적은 단순 위임사항만 규정한다고 명시함으로 제명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
- 안 제4조에 따라 실무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이 조례안에 담지 않고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